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연구활동종사자의 정신상 손해에 대한 보험가입
근거 마련 〉

■ 박충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743호)

2025.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 명 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연구활동종사자의 정신상 손해에 대한 보험가입 근거 마련(안 제26조제1항)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충권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9. 5.

다. 회부연월일 : 2025. 9.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 사고 발생에 대응하여 연구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외상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질병·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여 정신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연구활동종사자의 정신상 손해에 대한 보험가입 근거 마련 (안 제26조제1항)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 가입하는 보험의 범위에 정신상의 손해를 추가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대학·연구기관등의 대표자 등을 말하는 연구주체의 장¹⁾이 연구활동종사자²⁾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가입의 범위를 현행 “상해·사망”에서 “부상·질병·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신체상의 손해”로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u>상해·사망</u> 에 대비 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 ----- ----- <u>부상·질병·사망 등</u> <u>생명 및 정신상·신체상의 손해</u> 에--- -----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연구주체의 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학·연구기관등의 대표자

나. 대학·연구기관등의 연구실의 소유자

다. 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소속 기관의 장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연구활동종사자”란 제3호에 따른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연구기관등에 소속된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다.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6조제1항3)은 연구주체의 장4)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5)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또한, 현행법 시행령 제19조제1항6)은 법 제2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대해, 보험의 종류는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질병·신체상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연구주체의 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학·연구기관등의 대표자

나. 대학·연구기관등의 연구실의 소유자

다. 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소속 기관의 장

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연구활동종사자”란 제3호에 따른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연구기관등에 소속된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 보험의 종류: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질병·신체상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일 것

2. 보상금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보험급여별 보상금액 기준을 충족할 것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하고, “보상금액”은 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연구실사고로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현행법의 “상해·사망”을 “부상·질병·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신체상의 손해”로 규정하여, 정신상의 손해를 추가하면서 현행상 상해·사망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연구실사고 중 인적사고의 발생 현황 및 피해지원 현황을 보면, 전체 사고건수 1,115건 중 655건에 대해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고, 이는 모두 신체적 피해에 해당하며, 주로 보험(12억 34백만원)을 통해 지원되었음.

○ 최근 3년간 연구실사고의 인적 피해(신체적 피해) 지원 현황을 보면, 보험으로 지원된 금액이 12억 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관 자체 지원금이 1억 100만원, 둘 다 지원 받은 복합 지원금이 7,500만원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현황은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 구분 없이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신적 피해 지원액을 구분하여 확인할 수 없고, 다만, 현재 95% 이상의 대학교에서 가입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보험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정신적 피해 보험지원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최근 3년간 연구실사고의 인적 피해 발생 및 피해 지원 현황

연도	인적피해 보상건수 (총 사고건수)	신체적 피해 지원				정신적 피해 지원		
		보험 (지원액)	기관 자체 (지원액)	복합 (지원액)	기타	보험지원	기관 자체	기타
2022	242건 (327건)	175건 (423백만원)	38건 (32백만원)	9건 (24백만원)	20건 (-)	(-)	(-)	(-)
2023	247건 (394건)	163건 (622백만원)	52건 (57백만원)	6건 (28백만원)	26건 (-)	(-)	(-)	(-)
2024	166건 (394건)	99건 (189백만원)	51건 (13백만원)	3건 (23백만원)	13건 (-)	(-)	(-)	(-)
합계	655건 (1,115건)	437건 (1,234백만원)	141건 (101백만원)	18건 (75백만원)	59건 (-)	(-)	(-)	(-)

주1: “인적피해 보상건수”는 연구실사고 발생 후, 보상 등 후속조치가 완료·보고된 사고 건수 기준임.

주2: “보험”을 통한 지원은 연구실안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을 통해 지원이 완료된 건수임.

주3: “복합”은 1건의 사고에 대해 보험지원과 연구주체의 장 지원 등이 복합 보상된 건수임.

주4: “기타”는 연구실사고 피해자(개인)가 개인 보험 등으로 치료비를 자부담 처리한 경우로써, 비용은 별도 집계되지 않은 것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정안은 현재 신체적 피해를 중심으로 보험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상의 손해”를 법률에 명시하여, 정신상의 손해를 보험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연구실 사고로 정신상 손해를 입은 자의 보험 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한 취지는 공감한다는 측면에서 동의하는 입장임.
-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하게 연구실사고에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869)」가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36